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

실용신안권설정등록일부서의 연수	금 액
제1년 부터 제3년 까지	매년 1만2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부터 제6년 까지	매년 2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부터 제9년 까지	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1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